

2024년 경기 임팩트 유니콘 선정 및 모집 공고

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도내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 및 성장 지원을 위해 2024년 경기 임팩트 유니콘 선정 및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9월 30일
(재)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

1

경기 임팩트 유니콘 개요

□ 사업목적

- 혁신적 사업모델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지속성장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육성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

□ 경기 임팩트 유니콘 선정 기준

-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경제적가치 500억 원 이상인 사회적경제조직 등*
 - 아래 경기 임팩트 유니콘 조직 유형에 해당하는 법인 (개인사업자 해당없음)

경기 임팩트 유니콘 조직 유형	
(예비)사회적기업	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-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(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) -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
(사회적) 협 동 조 합 등	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마 을 기 업	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-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으로 지정한 기업

경기 임팩트 유니콘 조직 유형	
자 활 기 업	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
장애인 표준사업장	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
중증장애인생산품 생 산 시 설	-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
소 설 벤 처 기 업	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의10에 따른 소셜벤처기업

2 모집 개요

□ 모집대상

- 기본요건과 세부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- (기본요건) 경기 임팩트 유니콘 조직 유형에 해당되는 경기도 소재 법인
 -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법인에 한함 (개인사업자 해당 없음)
- (세부조건) 아래 ①,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
 - ① 2023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법인
 - ② 기업가치 산정기준*에 따른 기업가치가 500억 원 이상인 법인

【 기업가치 산정 기준 】

- 주식 투자 : 1주당 가격(투자액/주식수) x 총 발행 주식수
 - 회사채 투자 : 주식전환 가격 또는 투자심사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
 - ※ 기준시점 : 누적 투자유치 실적 중 최종 투자유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
- 1) 벤처투자기관의 인정범위는 [참고1] 참조
 - 2) 투자인정 범위
 - 신청접수 기간내 투자계약,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신규투자(보통주·우선주·CB^①·BW^②)에 한함(현물, 구주투자 제외)
 - 3) 기업가치 산정시의 투자는 위 1)~2)에서 정한 투자기관 및 투자금액에 한함
 - 단, 최종투자가 SAFE^③ 투자인 경우, 직전 투자 건의 기업가치를 적용
- ① Convertible Bond(CB, 전환사채)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는 채권
- ② Bond with Warrant(BW, 신주인수권부사채) 채권에 일정 가격에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채권
- ③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(SAFE, 조건부지분인수) 기업가치를 투자시점에 정하지 않고 후속투자를 받는 시점에 재평가하여, 투자에 따른 지분율을 후속 투자를 받는 시점에 산정하여 결정하는 계약방식

□ 지원내용

- 아래 사업 신청시 선정 가점 부여

구 분	인센티브 내용
경 기 도	•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 •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• 우수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•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•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 •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•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• 중소기업 개발·생산·판로 맞춤형 지원사업* *기존 사회적경제 기업 등 가점이 있는 경우 택일
경기도사회적경제원	• 투자 유망기업 추천을 통한 투자연계 지원 •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글로벌 진출 분야 신청 •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신청 •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신청 • 컨설팅, 교육 등 기업 및 대표자 역량강화 사업 신청

*경기 임팩트 유니콘 인센티브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청(선정) 제외 대상

【 신청(선정) 제외 대상 내용 】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▶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자(기업)

▶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

1. 「국세징수법」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④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- ⑤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곳
- ⑥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「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」 고시에서 정한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, 과태료 부과 등 법위반 사실 확인 시 (1회 이상)

▶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기준

-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⑥ 폐기물관리법
-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등

- ⑦ 금융불량 거래처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
- ⑧ 휴·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⑨ 재무제표 결산 기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
- ⑩ 기타 경기도사회적경제위원회가 참여를 제한할 사유(예: 사회적물의 발생 등)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□ 신청방법

- (접수기간) 2024. 9. 30.(월) ~ 10. 23.(수) 18:00
- (접수방법)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(www.gsic.or.kr)를 통한 접수(★기업회원가입 필수)
- (제출서류)

구분	제출여부
① [서식1] 신청서 1부	필수제출
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*말소사항 포함, 전체 페이지 제출	
③ 경기 임팩트 유니콘 조직 유형을 증명하는 서류	
④ 2023년 감사보고서 (감사보고서 미작성 기업은 표준 재무제표)	
⑤ 납세증명서 (국세, 지방세)	
⑥ [서식2]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
⑦ [서식3]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
⑧ [서식4]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	
⑨ [서식5] 투자유치 내역서	기업가치 기준 해당시
⑩ 투자계약서 사본 *투자유치 내역서에 기재한 가장 마지막 투자유치 투자계약서(사본) 일체	
⑪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주주명부	

□ 선정개요

- (선정절차)

구분	주요내용	일정
사업공고	▶ 경기도,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	9.30.(월)
↓		
온라인신청·접수	▶ 온라인 신청 (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)	~ 10.23.(수)
↓		
서류검토	▶ 서류누락 및 요건 충족 여부 검토	10월 중
↓		
범위반 사실 검토	▶ 요건 충족기업 범위반 사실 검토 * 기본요건 충족 여부 검토	10월 중
↓		
현장/원격 실사 (필요시)	▶ 현장 방문을 통한 대상기업 사업현황 및 평판 점검 등 * 원격 회의로 대체 가능	11월 초 ~
↓		
최종평가	▶ 경기도사회적경제위원회 심의를 통한 최종선정	11월 말
↓		
최종선정	▶ 선정결과 공고	12월 초

*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
- (심사기준) 정량평가^{매출규모+고용} + 정성평가^{사회가치+성장성} 합산 점수로 평가

(정량) 평가지표	배 점	(정성) 평가지표	배 점
1. 매출규모	30	3. 사회가치	25
2. 고용효과(인원)	20	4. 성장성	25
총 점	100		

□ 기타사항

-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자료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
- 선정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,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
- 심사 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
-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의 경우, 신청 무효 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을 취소하고 인센티브 부여 배제
- 동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「임팩트 유니콘 선정 계획」에 따름

4 문의처

구 분	담당기관	문의처
사업내용 관련 문의	경기도사회적경제원	031-258-3263 / 3264

□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실적 인정

1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(1)~(6)에 따른 자
 - ①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**벤처투자회사**
 - ②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**벤처투자조합**
 - ③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**신기술사업금융업자**
 - ④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**신기술사업투자조합**
 - ⑥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6조에 따른 **한국벤처투자**
2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
 - ① **신기술창업전문회사**
 - ②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**개인투자조합**
 - ③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**창업기획자(엑셀러레이터)**
 - ④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**한국산업은행**
 - ⑤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**중소기업은행**
 - ⑥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**은행**
 - ⑦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**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**(이하 “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”라 한다)
 - ⑧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
 - ⑨ 「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**농식품투자조합**
 - ⑩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**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**
 - ⑪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**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**
 - ⑫ **기술보증기금**
 - ⑬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**신용보증기금**
 - ⑭ 13의2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제1항에 따른 **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**
 - ⑮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
3.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**투자자산운용사, 증권사**

※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개인 투자자 (온라인 소액투자자 포함) 투자실적 제외